

서울 행정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1구합15138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원 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5층
대표자 회장 김선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호
피 고 외교통상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백종현
변 론 종 결 2012. 3. 21.
판 결 선 고 2012. 4. 13.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3.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6. 한미 FTA 추가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은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 정보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변호사들이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연구 등을 위하여 결성한 단체이고, 피고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체결을 위한 협상을 하였던 행정청이다.

나. 피고는 2006. 2. 3.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상개시를 공표한 이래 제8차 협상까지 교섭을 진행하여 2007. 4. 2. 위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타결을 선언하였다가 이후 미국측의 요구로 2007. 6.경 재협상을 진행하여 2007. 6. 30. 협상을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위 최초 협상부터 재협상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전문직 비자 쿼터¹⁾를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는 미국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수용되지는 못하였다.

다. 원고는 위 자유무역협정을 주도한 피고의 통상교섭본부장이던 김현종이 '한미 FTA를 말하다'라는 책을 발간하여 위 자유무역협정의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측으로부터 한국의 전문직 비자 쿼터 확보를 위한 서한(이하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이라고 한다)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밝히자 2011. 2. 10. 피고에게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3. 피고가 직무상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

1) 한국 국적의 의료, 법률 등 분야의 전문인력이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는 데 필요한 비자의 수 또는 물량

였고, 원고는 2011. 3. 15.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3.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원고의 주장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과정, 통상교섭본부장이던 김현종이 발간한 책의 내용과 김현종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을 수령하였던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가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을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되고,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의 내용은 한국의 유학생 등이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등 전 국민적 관심사항에 해당하여 그 공개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가 정보공개를 요구한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은 피고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족하다 할 것이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

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 945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전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으로부터 당시 미 국무부 비자담당 부차관보인 Tony Edson 명의의 한국의 전문직 비자 쿼터와 관련된 서한(갑 제9호증의 2)을 받았고, 현재 그 서한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재판의 전 과정을 통해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을 보유·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는 점, ② 전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이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미국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이 존재하고 현재 자신이 이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그 내용을 포함한 서한 전체를 사본하여 재판부에 제출한 점, ③ 이 법원이 비공개로 열람한 한미 FTA 관련 외교문서 수발대장에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과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은 김현종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일 뿐 그 외 피고가 달리 전문직 비자 쿼터 서한을 보유·관리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석준 _____

판사 양순주 _____

판사 김태훈 _____